

[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027호]

2025년 「장비 활용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24일

(재)평택산업진흥원장

01 지원개요

- 사업명 : 2025년 「장비 활용 지원사업」
- 모집기간 : 협약체결일 ~ 2025년 11월 28일(예산 소진시 종료)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단순 유통, 숙박 등의 업종 지원 불가
- 주요내용
 - 평택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연구기관, 대학, 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료를 지원
 -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ZEUS, i-Tube)에 등록된 연구개발 장비 사용에 따른 수수료 지원
 - 시제품 제작, 시험생산, 기술 및 제품 고도화 등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
 - 기업이 장비를 선(先)이용 후(後) 정산하는 방식으로, 기업당 연 1회, 최대 400만원 까지 지원

02 지원내용 및 선정방법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건 이내(최대 40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금액(소요 비용)의 한도 내 80% 지원(부가세 제외)
 -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및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지원금 기준 80만원 이상 활용건부터 지원
 - 장비 활용 지원
 - 당해연도(2025년) 연구장비 기활용 기업, 활용 예정인 기업 대상 지원
 - ※ 단, 협약기간(2025.11.28.) 이내 활용 및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 장비 사용료 지원
 - 장비 사용 기관과 장비명을 신청서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장비인 경우, 해당 기관 장비담당자의 서명 필수
 - 활용 목적에 따른 지원 가능 범위 : 초도양산, 시험생산, 개발·시제품 제작
 - ※ 동일 품목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일반양산으로 가정하여 지원 불가
 - 기업 선(先) 이용 및 정산 후(後) 지원(기업당 연 1회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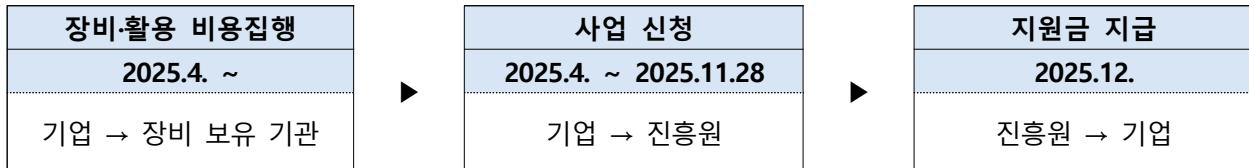
□ 사업비 편성

- 총 사업비(100%) = 지원금(80%) + 기업부담금(20%)

(단위 : 천원)

구분	총 사업비(100%)	지원금(80%)	기업부담금(20%)
		현금(100%)	현금(100%)
장비 활용	5,000	4,000	1,000

□ 지원 절차



- 지급방식 : 서류 검토 및 최종 지원 금액 산정 후 서류 접수순으로

□ 기업 선정방식

- 선정기준 : 접수순 (지원기업 적격여부 확인 완료 기업 中 접수순 선정)
 - 최종선정 후 지원금 지급(선정 후 2개월 이내) / 최종 선정 개별 연락

- 추가모집 또는 예비 순위자는 접수순으로 선정됨
 - 선정방식 : 제출서류 기반 적격성 검토 후 최종 선정

구분	항목	기준	결과
1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평택 소재 기업	적합/부적합
2	업종	단순 유통, 도·소매업 제외	적합/부적합
3	장비 활용 내역	2025. 1. 1. 이후 장비 활용 내역	적합/부적합
4	증빙서류	지출 증빙, 분석결과 성적서,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	적합/부적합

03 신청 및 접수

- 사업공고 : 2025. 4. 23.(수) ~ 2025년 11월 28일(예산 소진시 종료)

※ 제출서류 전체 제출분에 한하며, 서류 누락 시 미제출 처리

- 공고안내 : ‘평택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pipabiz.or.kr/icu) 사업공고 게재
 - 접수방법 :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접수(파일 업로드)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붙임 1】
2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	【붙임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3】
4	참여확인 및 청렴이행 서약서	【붙임 4】
5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 및 장비활용 주관기관)	신청기업, 장비 이용 기관
6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대조필 날인 / (국세)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정부24
8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 등) (5일~10일 소요될 수 있음)
9	장비사용 결과물	분석 결과보고서/성적서, 시제품 사진 등
10	기업(법인) 통장	사본 제출
11	지원금 지출 증빙(수수료 납부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붙임 5】

- 아래 서류들을 각각 PDF 파일로 변환한 후, 순서대로 넘버링하여, 1개의 압축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신청기업명.zip)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내용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화질이 낮거나 불명확하게 촬영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0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제한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타사 명의 참가
-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완납시 지원 가능)
- 혼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출서류 작성·구비가 불성실하거나 마감기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산정 시 부가세와 송금 수수료 등은 지원 불가
- 현금 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제출)

05 유의사항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실을 진흥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기업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 본 공고문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신청 가능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의 수정 및 보완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의 수정 및 보완요청이 있을 시 응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은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참여
※ 성과조사에 불성실한 경우, 추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